

캐나다 사슴 CWD 파동

지난해 12월 28일 본회 평택지회 결성총회에 참석키 위해 수원에서 안중간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발안지역을 통과할 무렵 사무처로부터 연락이 왔다. 『캐나다에서 광우병과 유사한 사슴 만성소모성질병(CWD)의 확산으로 감염된 사슴을 도축소각하고 녹용수출 금지조치가 내려졌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MBC-TV 취재기자의 취재요청이 있었고 보건복지부, 식의약청 담당자의 긴급 전화도 잇달았다고 한다.

MBC-TV 취재기자와 통화후 오후 4시경 사무처에서 만나기로 하고 안중에 도착했다. 12시부터 1시까지 평택지회 결성총회 행사를 마치고 점심도 거른채 부라부라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사무처에 도착한 시각이 오후 3시50분.

MBC는 물론 KBS, SBS-TV취재기자의 전화가 빗발쳤다. MBC-TV 취재기자와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타방송사와는 전화로만 대화하고 MBC-TV의 취재에 응했다. 이렇게 해서 당일 밤 9시경 관련 뉴스가 보도됐는데 협회측과의 대화 내용은 삭제되고 보도되지 않았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캐나다 사슴 CWD와 국산 녹용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이 나가도록 요청했지만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TV뉴스의 속성상 한가지 내용만 확대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 녹용 유통 현황만 집중부각 시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캐나다산 녹용뿐만 아니라 사슴산물, 그리고 수입되는 모든 녹용의 검역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 발표했다. 관련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전

송하고 농민단체협의회와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정당 등 70여곳에 배포했다.

다음날 몇몇 회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판매된 녹용이 「캐나다 사슴 CWD」 보도이후 반품되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캐나다산 녹용뿐만 아니라 녹용 자체 복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국산 녹용은 캐나다 사슴 CWD와 무관하다는 성명서를 긴급히 작성하여 관련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전송했다. 언론사에는 전화를 걸어 기사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실 캐나다 사슴 CWD는 3년전부터 징후가 나타났다고 외신은 전했다. 지난해 11월초 미국 콜로라도주와 와이오밍주는 CWD 주의보를 내린바 있다. 북미지역 전체가 사슴 CWD 공포에 떨고 있다고 보면된다. 캐나다 당국이 지난해 12월 28일에야 수출된 녹용을 리콜(회수)한다고 보도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이미 캐나다 양육관계자들 사이에서는 CWD의 심각성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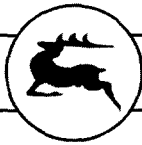
캐나다 사슴 CWD 확산으로 녹용과 사슴 수입이 일단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기회로 국내 양육업 경쟁력 강화의 호기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녹용의 정의(定義)

사슴에서 생산된 뿔이면 다 녹용인가. 일반적으로 『사슴의 각질화 되지 않은 수컷(♂)의 뿔로 만져보면 조직이 연하고 털이 골고루 덮여있는 것을 녹용』이라 하며 최고의 보약이자 치료제로 알고 있다. 틀린말이 아니다.

좀더 명확한 표현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나와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정 고시한 녹용의 정의(定義)를 살펴보자.

<이 약은 매화록(梅花鹿) *Cervus nippon* Temminck, 마록(馬鹿) *Cervus elaphus* Linne 및 대록(大鹿) *Cervus Canadensis* Erxleben(사



슴과 Cervidae)의 수사슴의 털이 밀생되고 아직 끝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끝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이다.>

그동안 협회에서 녹용의 정의를 개정해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어느정도 반영된 내용이나 아직도 미흡한 구석이 남아있다.

「매화목」을 「꽃사슴」으로, 「마목」을 「붉은사슴」으로, 「대목」을 「큰사슴」으로 사슴명칭을 순 한글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끝질화되지 않았거나 약간 끝질화된 어린 뿔을 자른 다음 말린 것이다」를 「끝질화된 뿔이다」로 단순 명료화 하고, 회분함량을 전지평균 35.0%이하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에 「녹용」과 「녹용각」으로 이원화된 명칭을 「녹용」으로 단일화 하고,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는 대신 「대목」을 추가해 줄 것과, 「수사슴」의 뿔만 녹용으로 인정토록 해야 한다는 건의는 그대로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녹용규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지해야 될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① 사슴명칭이 한글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슴과(Cervidae), Cervus속(屬) 학명에 해당되는 사슴의 뿔만 녹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육되는 꽃사슴, 엘크, 레드디어에서 생산된 뿔은 모두 녹용에 해당된다. 그러나 고라니아과, 흰꼬리사슴아과, 문착아과에 속하는 사슴 뿔은 녹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흰꼬리사슴아과의 일종인 순록(Reindeer)의 뿔이 녹용이 아닌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Cervus속(屬) 사슴 일지라도 학명이 틀린 물사슴(삼바), 흰입술사슴, 늑사슴, 바라싱가, 타민사슴, 엘트사슴, 루사사슴 등의 뿔도 녹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에 「동속근연동물」을 삭제하는 대신 대목

(大鹿, *Cervus Canadensis*)을 추가하여 엘크(Elk)의 뿔이 녹용으로 확실히 인정된 것은 패가 아닐수 없다.

② 학명상 녹용을 생산하는 사슴일지라도 수사슴의 뿔만 녹용으로 인정되고 암사슴의 뿔은 녹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 암사슴에서 뿔이 나오게 하여 채취한 것도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회분함량에 따라 「녹용」과 「녹용각」으로 이원화된 명칭이 「녹용」으로 단일화 되었다.

「녹용각」이란 명칭이 없어진 것이다. 「녹용」은 절단 부위부터 5cm까지 부분의 회분이 35.0%이하 이어야 한다. 회분이 35.0%이상은 녹용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 모순된 개정 내용이 아닐수 없다. 「채취」가 아닌 「절단」 부위부터 5cm까지의 회분을 말하고 있어 35.0%이상인 하대부위를 끊어내면 「녹용」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외산녹용의 대부분이 정상규격을 무시하고 회분함량만을 맞추기 위해 하대부위를 잘라내고 편법으로 수입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하대부위를 잘라내도 「절단 부위부터 5cm까지 부분」의 회분이 35.0%이하이면 녹용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녹용성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생략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녹용규격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새로 개정고시된 「녹용규격」을 제대로 인식하여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의 제조 허가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 의약품은 제조 허가 판매과정이 아주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간단하다. 의약품은 동물실험과 3단계에 걸친 임상시험 등을 무사히 통과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건강보조식품은 1989년 식약청에서 승인한 24개 품목에 들어있으면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청의 식품공전에 적혀 있는 모양·성분·수분함량 등의 기준 규격만 충족시키면 된다. 식품공전에 없는 새 성분으로 만들 경우 식약청 독성연구소의 독성실험을 통해 안정성만 입증되면 허가가 난다.

이 때 안정성이란 인체에 해로운 대장균이나 중금속이 없다는 의미지 의약품처럼 치료 효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의약품은 질병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있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그렇지 않다.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의약품 개발에 드는 비용의 10분 1만 투자해도 경쟁력 있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 수 있다. 기간도 의약품은 적어도 5~10년이 걸리지만 건강보조식품은 1, 2년이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사슴 및 녹용종탕은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이다.*

• 풍향계

한약재 · 건식 불법광고 「적발」

— 식약청 특별약사감시 17개소 행정처분 —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과 상황버섯 등을 제조·유통시키면서 의약품인양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건식·제약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상황버섯 판매업소의 무분별한 허위·과대 광고와 한약재 사용 건식 등을 특정질병 치료목적의 의약품인양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와 관련, 관련업체 175개소에 대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이 중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시켰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중 상황버섯 관련 위반유형은 7건이며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 유형은 11건이라고 덧붙였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동화약품공업(대표·황규인)은 동화「신기원」을 판매하면서 「녹용-조혈작용 및 강심작용, 인삼-혈당강하, 혈압강하 작용 등 신기원의 간 해독작용 및 간 보호 작용」 등으로 불법 광고, 약사법 55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문제약(대표·임상희)은 제품 「속풀이」에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택사·초두구·후박을 원료로 사용, 식품위생

법 7조를 위반했다.

고려식품(대표·장병기)은 여러 가지 한약재를 포장한 제품 「고려」 홍보물에 해소·천식, 가래, 감기, 혈액순환 등에 좋다는 과대광고를 해 된서리를 맞았다.

하명식품개발원(대표·현영대)은 식품인 「하명장수」를 해열·진통 등 성분별로 효능·효과 표기 광고를 일삼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상황버섯을 판매하면서 전단지에서 「항암효과」 「기적의 상황버섯 암저지율 96.7%」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 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된 일조생물산업(대표·이성구) 등 상황버섯 판매업소들이 철퇴를 맞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지시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특정질병에 특효약인양 허위·과대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와 무자격자의 한약재 취급행위 등 무분별한 한약재 오·남용 조장 등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